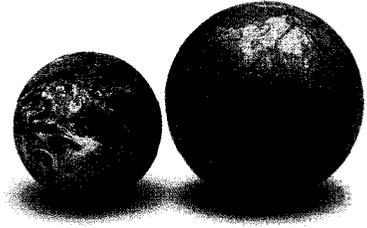


# 입국시 HIV 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들

클 편집실

HIV 감염인들은 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거주나 이동의 자유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놓여있다. 특히 유학이나 취업, 이민을 위해 다른 나라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HIV 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음은 미 CDC에서 2003년 세계 각국의 HIV 감염인·환자물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조사한 결과들이다. 해당국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혹은 유학 등 장기간 해외에 머물거나 이민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루지아	1개월 이상 체류시	바레인	조리, 환자 간호, 육아 관련 직에 취업할 경우
그리스	그리스법에 정의된 성매매시	벨로루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남아프리카	모든 광산노동자(직위와 상관없음)	벨리즈	거주허가 신청시
대만	거주, 취업허가 신청시(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HIV 검사)	불가리아	이민신청서(취업 혹은 유학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거주시)
도미니크공화국	주거, 유학, 취업시	브루나이	취업허가 신청시
라트비아	거주허가신청시	사우디 아라비아	거주/취업허가 신청시
러시아	3개월 이상 체류시	세이셸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시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레바논	거주 혹은 취업시(대학에서 유학생에게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세인트 빈센트	일시/영구 거주비자 신청시
리비아	거주허가신청시(단 공무 방문자 제외)	세인트 키츠 네비스	학생, 이민신청자, 취업희망자
리투아니아	영주권 신청시	스페인	거주, 취업, 유학 허가 신청자는 건강진단서 제출(HIV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마셜제도공화국	30일 이상 체류하는 임시방문자, 거주/취업허가 신청자	슬로바키아	장기 혹은 영구 거주비자 신청자
말레이시아	미숙련노동자의 취업시	시리아	15일 이상 체류하는 15~60세의 모든 외국인
모르셔스	취업시, 영주권신청시(검사는 입국시 행해짐)	싱가포르	한달 월급이 1,250 달러 이하인 노동자, 영구거주 신청자(단,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아내와 자녀 제외)
몬세라트	취업/거주허가 신청자, 대학생		
몰도바	3개월 이상 체류시		
마이크로네시아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입국일 경우 HIV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b>아랍에미리트연합국</b>	취업, 거주허가신청자(단 18세 이하는 제외)	<b>중국</b>	6개월 이상 거주사(홍콩, 마카오는 입국 혹은 거주시 제한 없음)
<b>아루바</b>	이민시	<b>중앙아프리카공화국</b>	주거, 취업, 유학시 HIV검사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필수
<b>엘살바도르</b>	15세 이상의 일시/영구거주 시 건강이 좋아보이지 않을 경우 HIV 테스트를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b>카자스탄</b>	1개월 이상 체류시 10일 이내에 HIV 테스트 확인서 제출
<b>영국</b>	건강이 좋아보이지 않을 경우 HIV 테스트를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b>카타르</b>	취업, 거주비자 신청시, 1개월 이상 체류시
<b>에멘</b>	취업, 유학(16세 이상)허가 신청자, 1개월 이상 체류 모든 외국인, 에멘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단, 전문가, 교사, 에멘주재 외국 사절단 제외)	<b>캐나다</b>	HIV양성이 의심되는 경우(단 입국시 HIV 테스트는 강제규정이 아님)
<b>오만</b>	민간 회사의 신규 고용인으로 입국시 혹은 계약갱신 시	<b>콜롬비아</b>	HIV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b>오스트레일리아</b>	15세 이상의 영주신청자(그외 의료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클리닉에서 검사)	<b>쿠바</b>	90일 이상 장기 체류사(단 외교관 제외)
<b>요르단</b>	3개월 이상 체류시	<b>쿠웨이트</b>	거주신청시
<b>우즈베키스탄</b>	15일 이상 체류재정기체류시 첫 3개월 후 HIV 확인서를 갱신해야 함. 그후 매년 제출)	<b>키르기스탄</b>	1개월 이상 체류시(단 외교관 제외)
<b>우크라이나</b>	3개월 이상 체류시	<b>키프로스</b>	취업, 유학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후 HIV 테스트 실시
<b>이라크</b>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HIV검사 실시. 검사비용은 50달러(US) (단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검사제외, 또한 외교관, 이슬람성지순례자, 혈우병 없는 14세 이하 아동, 50세 이상의 여성/60세 이상의 남성 제외)	<b>타지키스탄</b>	90일 이상 체류시
<b>이집트</b>	유학, 연수, 취업사(신청자의 배우자는 면제)	<b>터크스카이코스제도</b>	외국인 노동자(취업허가시 필요한 건강검진에 HIV 테스트 포함)
<b>인도</b>	18세 이상 학생, 유효기간 1년 이상의 비자를 지닌 18세~70세 모든 이(단 언론인/외국 사절단 제외)	<b>투르크메니스탄</b>	3개월 이상 체류시
		<b>파나마</b>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 파나마에서 비자상태를 변경하는 사람
		<b>파라과이</b>	일시 혹은 장기 거주 신청시
		<b>파푸아뉴기니</b>	취업 혹은 거주비자 신청시 (부양가족 포함)
		<b>한국</b>	연예나 운동경기를 위하여 91일 이상 체류할 경우
		<b>헝가리</b>	1년 이상 거주신청자, 이민신청자 (사업자들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해 HIV 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함)